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구 심벌마크에 맞추어 우리구 수입증지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문양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증지에 인영된 사하구 상징문양을 새로 바뀐 문양으로 변경하고 문양위치를 상단부에 표시되도록 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2007. 5.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각종제증명에 사용할 「계기 수입증지」와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된 심벌마크와 동일하게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 구기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후속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